

사전지정운영제도 (디폴트옵션)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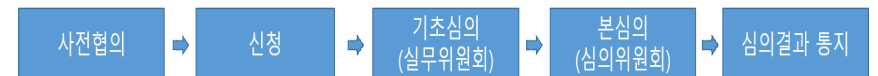
동 자료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영제도 (디폴트옵션) 시행을 준비함에 있어 참고하는 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FAQ 내용은 향후 제도시행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1 사전지정운영방법 승인

Q-1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전지정운영방법 승인을 받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승인 신청을 하기 전 본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포함하여 이메일, 서면, 대면접수 등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사전협의에서는 필요한 신청서류 및 기본적인 요건 충족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협의하며, 사전협의를 완료될 경우 신청기일을 포함하여 승인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심의절차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Q-2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되나요?

- 심의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며, 심의위원 중 정부위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됩니다.
- 민간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 가능하며, 관련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등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Q-3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 승인신청서 제출서류와 방법은 사전협의 신청서와 동일합니다.
 - 상품유형에 맞는 신청서 양식과 양식에 첨부된 승인신청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하고,
 - 상품약관,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사업자가 상품 승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도 붙임으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기초심의와 본심의를 무엇이 다른가요?

- 기초심의에서는 본심의 상정을 위한 평가자료 작성 및 본심의 논의를 위한 기초심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심의에서는 심의위원간 논의 방식으로 승인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Q-5

승인 신청 후 본심의에 올라가기 전에 신청 철회를 할 수 있나요?

- 네. 자료 및 요건 보완 등을 위해 본심의에 올라가기 전 철회가 가능하며, 향후 보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6

심의결과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승인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심의위원회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동일 상품으로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재심의 혹은 자료보완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보류” 결정을 하게 되며, “보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심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불승인” 결정을 합니다.

Q-7

이미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과 동일한 상품을 신청할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 이미 승인 받은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신청할 경우에도 본심의에 상정하여 심의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승인절차는 간소화 하여 본심의에 상정하며,
- 동일상품인지 여부는 실제 상품명(상품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금리·수수료·비용 등 주요내용의 변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Q-8

포트폴리오 유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동일상품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포트폴리오 내 상품들의 상품코드가 모두 일치하고, 구성 및 비중, 운용주체 역시 모두 일치한다면 동일상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포트폴리오 유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구성 및 비중, 운용주체가 모두 같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동일 상품일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9

심의신청서 양식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심의신청서를 포함한 사전지정운영제도와 관련된 양식은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Q-10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신청이 가능한 상품 유형이 정해져 있나요?

-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 법령의 기준에 따르면,
 - ① 원리금이 보장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절차를 고려할 때 상시가입이 곤란한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② 펀드 유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의 4가지 유형의 펀드*가 가능하며, 펀드유형으로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구성할 경우, 가목 혹은 나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 편의상 이하에서는 가목 TDF, 나목 BF, 다목 SVF, 라목 SOC펀드로 지칭
 - ③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를 혼합한 포트폴리오 유형도 가능합니다.

Q-11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이란 근로자퇴직급여법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원리금보장상품만을 의미하나요?

-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을 의미합니다.

Q-12

승인신청이 가능한 상품 단위는 무엇인가요?

- 법령상 요건을 갖춘 단일 상품으로 신청하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춘 단일 상품을 묶은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13

승인상품의 수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소수의 “대표상품”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켜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적절한 수의 상품 승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는 투자성향 분류를 고려하여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상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4

승인상품의 수를 7~10개로 한정된 이유가 있나요?

-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투자성향(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을
고려하여 상품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승인 취소될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을
동일한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하는
가입자 보호 규정으로 인해, 각 등급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최소 7개 필요
 - * 초저위험의 경우 승인취소 가능성이 거의 없고 특수성을 고려하여 1개만 승인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소수의 대표상품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켜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너무 많은
상품의 승인을 허용할 수 없어 최대 10개*로 제한하였습니다.
 - * 최대 승인 상품의 수: 초저위험 1개, 저위험 3개, 중위험 3개, 고위험 3개

Q-15

제도 시행 후 첫 승인 신청 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 상품 수인 7개를 필수로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 첫 승인 신청 시 최소 신청해야 하는 상품 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 및 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안에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는 7개 이상의 상품을 신청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Q-16

원리금보장상품 유형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요?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구조와 취지를 고려할 때, 상시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아울러, 만기와 금리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발행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17

펀드, 포트폴리오 상품 유형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요?

- 펀드, 포트폴리오 유형의 구체적 승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TDF, BF, SVF, SOC펀드 중 하나가 운용계획의 주요 운용내용일 것
 - 자산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울 것
 - 물가, 환율, 금리, 기타 경제의 증장기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가입자 집단 속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내일 것
 - 예상 수익이 금융시장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될 것
 -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증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
 -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하여 과다하지 않을 것
 - 펀드유형으로만 구성 시 TDF 혹은 BF를 포함하고 있을 것
 - 상시 가입이 가능할 것 등

Q-18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의 수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대상이 되는 가입자 특성을 고려할 때, 투자전략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므로 포트폴리오 속 상품은 최대 3개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19

승인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승인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승인 후 1주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Q-20

기존에 금융감독원 약관 승인을 받은 상품의 경우에도 다시 약관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기존 약관 승인을 받은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클래스 신설 및 수수료 변경 등이 필요하므로 금융감독원 약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21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상품도 사업자가 승인 받을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개수 제한에 포함되나요 ?

- 포트폴리오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상품의 수는 사업자가 승인 받을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개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2

포트폴리오의 경우 위험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아래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도 분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도는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의 5단계로 구분
- (위험도 산출 기준) 개별상품의 위험도를 가장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도로 적용
 - (개별상품) 원리금보장상품은 4~5등급*을 적용하고, 실적배당형 펀드, MMF 등은 투자설명서상의 위험도(자산운용사 결정)를 준용**
 - * (4등급) 원리금 보장 ELB, 저축은행 예금, (5등급) 은행 예·적금, 국고채 등
 - ** 현재 투자설명서 등에 6등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펀드 위험등급을 퇴직연금 투자권유준칙에 부합하도록 5단계로 조정하여 적용

펀드 위험등급별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위험도

펀드 위험등급	6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다소 높음)	2 (높음)	1 (매우 높음)
디폴트옵션 적용 위험도	5 (초저위험)	4 (저위험)	3 (중위험)	2 (고위험)	1 (초고위험)	

- (포트폴리오) 상품별 위험도를 투자비중으로 가장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전지정운용방법 위험도를 결정(소수점 둘째자리 버림)
 - * (초고위험)1~1.8, (고위험)1.9~2.6, (중위험)2.7~3.4, (저위험)3.5~4.2, (초저위험)4.3~5

사전지정운용방법 위험도 산출 예시

자산군	상품명	개별 위험도	적용 위험도	포트폴리오별 편입 비중(%)				
				①	②	③	④	
원리금	우리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5	5	30	50	10	40	
TDF	신영TDF2040 증권투자신탁	2	2	30	10	30	30	
BF	삼성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	4	3	20	10	5	20	
MMF	NH-Amundi 개인신중MMF 1호	6	5	-	30	5	10	
인프라	KB미국데이터센터인프라리츠 부동산투자신탁	2	2	20	-	50	-	
포트폴리오형 사전지정운용방법				산출값	3.1	4.5	2.5	3.7
				위험도	중위험	초저위험	고위험	저위험

Q-23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승인 받은 이후, 승인 시점보다 금리가 낮아져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서 유지 될 수 있나요?

- 원리금보장상품은 매월 금리가 변동되므로, 단지 승인 시점보다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해당 상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서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승인신청 시 금리가 변경되는 기준을 제공 받아 심의할 예정이며,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승인 받을 당시의 요건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승인 받은 상품이 승인 당시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승인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을 주기로 정기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Q-24

포트폴리오의 구성 상품 중 가입자의 투자성향 보다 높은 등급의 상품이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가입자는 해당상품을 선정할 수 없나요?

-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에 가입자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상품이 존재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차원의 위험등급이 가입자의 투자성향등급에 비추어 적합하다면 해당 포트폴리오는 가입자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Q-25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중 '14일 이내에 환매 가능' 관련하여, 주말이나 연휴가 포함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환매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 정상적인 매도 절차에 따라 환매를 진행했고, 퇴직연금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 초과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Q-26

승인 요건만 충족된다면 기존 DC/IRP에서 제공하는 상품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일반 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적립금과 수익률 등을 공시하여야 하며,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동일한 명칭의 일반 상품과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를들어, 펀드의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 전용 클래스를 신설하거나 예금상품의 경우 별도의 상품코드 또는 상품명을 신설하여 승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Q-27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상품도 반드시 사전지정운용방법 전용 상품이어야 하나요?

- 포트폴리오는 법령에서 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유형 중 둘 이상의 운용유형을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승인 받는 형태입니다.
-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상품을 개별적으로 모두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상품으로서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기준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28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개별상품의 만기가 상이해도 되나요?

-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편입되는 상품의 만기를 모두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 5년만기 정기예금 50% + 3년만기 정기예금 50%의 형태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음)

Q-29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명칭은 어떻게 정하나요?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명칭은 퇴직연금사업자명 + 디폴트옵션 + 위험등급 +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정해야 합니다.
(예: ○○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TDF)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명칭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며 공시에도 적용되므로, 가시성 등을 감안하여 일관된 명칭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사전지정운용방법 선택

Q-30

퇴직연금사업자는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일부만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나요?

- 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상품 모두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승인 상품 중 일부만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사전지정운용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Q-31

사용자가 특정 유형(펀드/원리금보장) 혹은 특정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만을 희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용자의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연금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Q-32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사용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대표자, 퇴직연금 관련 업무의 부서장 등 업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자 또는 해당 사용자를 대신하여 퇴직연금 관련 통지를 받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Q-33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사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 사용자에게 대한 정보 제공 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위험등급, 자산배분현황, 위험수익 구조,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 다.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절차)
 3.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Q-34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사용자에게 대한 정보 제공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Q-35

사업장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시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일부만 규약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변경은 노사합의를 통한 결정 사항이므로 이 중 일부만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제도의 취지와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을 고려할 때,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모든 상품 또는 최소한 투자성향별로 하나 이상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Q-36

근로자 대표의 동의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하나요?

-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위한 근로자대표의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동의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하며, On-Line을 통한 전자동의 방식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에 해당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Q-37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근로자대표가 결국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제도를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제도로써 고용노동부는 미도입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대표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지속 설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내용의 증빙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시 참고할 예정입니다.

Q-38

사업장에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규약에 명시하였으나, 명시된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 방법도 규약에 반영해야 하나요?

- 퇴직연금규약은 규약 시행일 또는 변경 시행일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만을 규약에 명시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9

사용자는 사업자별 최대 몇 개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규약에 반영할 수 있나요?

-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위험성향별 1개 이상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에 대해서 사업장에 반영할 수 있는 최대 상품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Q-40

퇴직연금사업자가 제도 시행 이후 4개의 상품만 승인 받아 사용자에게 제시하였는데, 향후 추가로 승인 받을 경우 기존에 4개만 제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된 상품을 다시 제시해야 하나요?

- 규약 변경 당시 승인 받은 상품을 모두 제시하였다면 향후 추가 승인 받은 상품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향후 승인취소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입자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추가 승인 받은 상품을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규약에 추가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41

추가 승인 받은 상품을 규약에 반영할 때도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추가 승인 받은 상품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규약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단순히 상품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

Q-42

사용자가 규약에 설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통한 규약 개정이 필요한가요?

- 규약에 반영되어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시에는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규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43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위해 규약 변경 신고 시 여러 사업장을 지방관서 단위로 일괄 신고할 수 있나요?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위한 규약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Q-44

법 시행에 따라 기존 DC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는 규약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존 DC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규약에 사전지정운용제도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규약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Q-45

퇴직연금사업자가 추가될 때마다 매번 규약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약 상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기준만 명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는 사업자명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규약에 명시해야 한다면, 위와 같은 사업장의 경우도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할 때마다 매번 규약을 변경해야 하나요?

- 법률 개정에 따라 DC제도에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은 반드시 규약에 명시해야 하므로,
-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 등을 거쳐 변경해야 합니다.

Q-46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제공할 때,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만 제공하면 되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 할 때에는 규약에 명시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Q-47

가입자가 규약에 명시된 사전지정운용방법 외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가입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규약에 반영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승인 받은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48

퇴직연금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하나요?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은 별도의 상품 권유가 아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상품의 정보제공에 해당하므로 금소법 상 광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광고성이 아닌 법정안내로서 마케팅 동의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보를 제공할 때 승인받은 모든 사전지정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가입자에게도 규약에 명시된 모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Q-49

가입자가 회사가 규약에 명시해둔 것 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설정하고 싶어합니다. 가능한가요?

-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가입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에서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규약에 명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외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운용지시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바로 운용지시는 가능합니다.
- 회사와 계약하지 않았거나, 규약에 명시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 할 수는 없습니다.

Q-50

퇴직연금규약에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전”까지는 기존 규약에 따른 자동운용상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 “자동운용상품”은 사전지정운용제도와 상충되는 제도이므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면 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자동운용상품”은 규약과 퇴직연금계약에 근거하는데, 법률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계약서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 따라서, 규약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계약서가 변경된 이후부터는 DC/IRP 신규 가입자의 경우 자동운용상품의 적용이 불가능하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부담금 자동 투자비율로 등록되어 있던 자동운용상품이 삭제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야 합니다.

Q-51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경우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모든 개별상품의 설명서까지 함께 제공해야 하나요?

-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구성 상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의 설명서 뿐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상품의 설명서 제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포트폴리오 설명서에도 개별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이 충분히 기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Q-52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가입자는 스스로 본인에게 적용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또한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조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Q-53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안내가 광고에 해당하나요?

-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은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안내이므로 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Q-54

사용자가 규약변경을 거부하거나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나, 사업장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 다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5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시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의무가 적용되나요?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금소법상 의무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적용되는 금소법상 의무와 동일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규약에 명시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합니다.
 - 1) 권유 희망 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소법 상 의무 적용
 - 2) 권유 불원 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만 수행

Q-56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본인의 투자성향이 변경될 경우 가입자는 변경된 투자성향에 맞도록 자신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가입자가 처음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지 않는 한 향후 투자성향 변경으로 인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57

퇴직연금사업자가 투자성향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일부 투자성향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만 규약에 반영한 경우, 투자권유 시 금소법 의무 적용 방법은?

- 가입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적합성 원칙 등 금소법 상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일부의 투자성향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만 규약에 반영하였다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 중에서 투자권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이때, 가입자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만을 규약에 반영할 경우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 사업장은 최소한 초저위험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은 포함하도록 하고, 투자성향별로 하나 이상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Q-58

자기 부담금, 회사 부담금, 퇴직금, 경영성과급 등에 따라 별도로 운용지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도 자금 유형별로 선정이 가능한가요?

- 가입자는 하나의 제도에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DC제도와 IRP를 각각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도 각각 지정해야 합니다.

Q-59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 대한 민원 방지 차원에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선정을 거부하는 고객에 한하여 원리금보장상품의 재예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면,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는 전면 금지됩니다. (단, 기존 약관 및 계약사항의 변경, 전산 개발, 가입자 안내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23.7.11까지)은 제한적으로 재예치가 허용될 예정)
- 따라서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사전지정운용방법도 선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 재예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60

펀드로만 투자하고 있던 기존 가입자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나요?

-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은 기존 적립금의 운용방법과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를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도 예외없이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미리 선정해 두어야 합니다.

Q-61

가입자가 기존에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가입자는 규약에 명시된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미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도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

Q-62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중인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선정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적립금을 반드시 매도해야 하나요?

- 가입자는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선정을 변경했다고 해서 기존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까지 매도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가입자가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은 향후 본인에게 적용될 사전지정운용방법이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적립금으로 운용중인 사전지정운용방법이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Q-63

DC제도에 가입하고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DC제도에 가입함으로써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될 상품을 스스로 사전에 선정”해 놓고, 실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DC 가입 시점에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해 두지 않았거나, 스스로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한 경우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64

기존 운용하던 상품 만기 도래일에 바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이전되어 운용되는건가요?

- 만기 후 4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가 도래한 적립금이 2주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게 됩니다.
- 통지 후 2주가 지났음에도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만기가 도래한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Q-65

DC제도 가입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도 선정하지 않고, 스스로 운용지시도 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 DC 가입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때, 운용지시가 없는 가입자의 적립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 * 대기성 자금이란,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보험,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 대기성자금으로 계속 운용할 경우 가입자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Q-66

만기가 도래한 후 4주가 경과한 시점에서 통지하고, 통지 후 2주 지난시점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일자 예시

- 6/1일 만기건은 6/30일(4주가 지났을 때, D+29일)에 통지가 필요하고, 통지 기산일(6/30일)부터 2주 이후(D+15일, 7/15일)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합니다
 - * 적용 :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방법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되는 절차의 시작을 의미

Q-67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는 통지를 언제 받게 되나요?

- 기존 가입자는 만기가 있는 운용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4주가 지났을 때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며,
- 신규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해 두었으나, 운용지시는 하지 않은 경우 최초 부담금 납입 이후(부담금 납입 익영업일)에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 * 이 법 시행일 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거나,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의미.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승인받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이전을 한 경우도 포함

Q-68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는 통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 통지 시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법 제21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가입자의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3. 가입자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언제든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Q-69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Q-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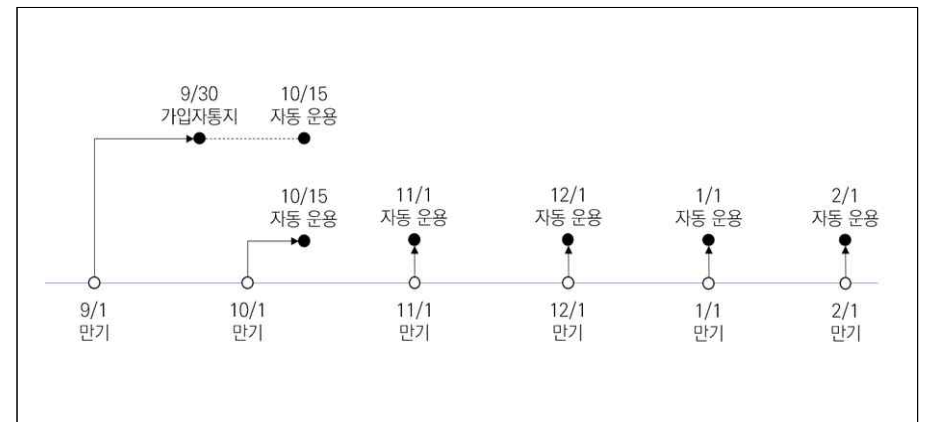
최초 가입자가 사전지정운동제도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었을 때, 2회차 이후 부담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가입자통지와 2주간의 대기기간을 적용해야 하나요?

- 최초 부담금에 대해서 가입자통지와 2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사전지정운동방법의 적용이 완료된 경우라면,
- 2회차 납입 이후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입자통지와 대기기간 없이 부담금이 납입 되는대로 사전지정운동방법으로 운용됩니다.
- 만약 최초 부담금이 아직 사전지정운동방법으로 운용되지 않은 상태(2주간의 대기기간 중)에서 2회차 부담금이 먼저 납입될 경우에는, 가입자통지는 생략하고 최초 부담금이 사전지정운동방법으로 운용되는 시점에서 2회차 부담금도 함께 운용됩니다.

Q-71

월납, 분기납 등 빈번하게 입금되는 부담금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던 가입자의 경우, 만기 시마다 매번 가입자통지를 포함한 6주간의 대기기간을 적용해야 하나요?

-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6주간의 대기기간(가입자통지 포함)을 거친 후 가입자가 선택한 사전지정운동방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 다만, 가입자가 동일한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 주기로 인해 만기가 여러 번에 걸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하여 최초 만기 시에만 가입자통지와 대기기간을 적용하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는 만기 도래 즉시 사전지정운동방법으로 운용합니다.
- 관련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동일 상품에 대한 만기 상환 처리 사례

- 첫 번째 만기 도래분이 6주를 대기하는 동안 두 번째 만기 도래분이 먼저 발생한 경우, 두 번째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가입자통지를 생략하고 첫 번째 만기 도래분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시점에서 함께 운용됨
 - 첫 번째 만기 도래분이 6주를 대기하는 동안 가입자가 해당 만기 상환금액 전액을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할 경우, 두 번째 만기 도래분은 별도의 가입자통보와 6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침
 - 첫 번째 만기 도래분이 6주간 대기기간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고, 두 번째 이후 만기 도래분이 가입자통지와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을 매도할 경우 향후 만기 도래분에 대한 처리 방법
 - 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만 매도하는 경우
: 향후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도 가입자통지와 6주간의 대기기간 생략
 - ②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전부를 매도하는 경우
: 향후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가입자통지와 6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침
- ※ 동일한 상품의 기준점을 잡는 방식, 가입자가 적립금의 일부만 매도할 경우 언제 매수한 적립금부터 매도한 것으로 간주할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예: 선입선출 적용)

Q-72

위 예시에서 최초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일 이전 만기건(10/1)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일자?

-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만 가입자통지를 포함한 6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치며, 이후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입자통지와 대기기간 없이 바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합니다.
- 다만, 해당 사례와 같이 첫 번째 만기 도래분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기 위하여 6주를 대기하는 동안 두 번째 만기 도래분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
- 첫 번째 만기 도래분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시점에서 두 번째 만기 도래분도 함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합니다.

Q-73

위 예시에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된 이후(10/1 이후)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별도의 가입자통지 절차가 필요한가요?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중에도, 가입자는 향후 적용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만기 도래 시 적용할 사전지정운용방법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상품의 만기 도래 시 처리 절차는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가입자통지와 대기기간 없이 바로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합니다.

Q-74

정기 부담금이 아닌 비정기 부담금(수시납)의 만기 도래시에도 동일한 상품이라면 가입자 통지 및 6주 대기기간 없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나요?

- 비정기적으로 납입된 부담금도 동일한 상품이라면 최초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만 가입자 통지를 포함한 6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치고,
- 이후 도래하는 만기분부터는 가입자통지를 포함한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목돈으로 입금된 비정기부담금은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정기부담금과 다른 성격의 자금으로 여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가입자 안내 조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75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변경한 뒤 다시 기존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수행한 경우(예: 1월~6월까지 입금된 부담금은 A정기예금으로 운용지시하였고, 7월~10월까지 B정기예금으로 운용지시한 후 11월 이후부터는 다시 A정기예금으로 운용지시함), 만기 도래분에 대한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방법은?

- A상품에 대한 운용지시를 중단하고 B상품으로 운용지시 한 후에 다시 A상품으로 운용지시한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운용지시로 판단하여 통지를 포함하여 6주간의 대기기간이 다시 적용됩니다.

Q-76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후 6주 간의 대기기간 동안에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기준은?

- 운용하던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도래한 후 4주가 경과된 시점에서 통지를 하게 되는데,
- 이때, 통지가 있기 전에(만기일~통지일 전영업일)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한다면, 가입자 통지 시 가입자가 변경한 내용을 반영하여 통지해야 하며,
- 통지일 이후에(통지일~운용일 전영업일)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한다면, 통지 단계에서는 변경 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통지가 되었더라도, 적용 단계에서는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Q-77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는 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해도 되나요?

- 사전지정운용방법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운용지시를 통해 다른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운용지시 외 금액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됩니다.

Q-78

기존 상품 만기 도래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되기 전까지의 기간(가입자통지를 포함한 6주의 대기기간) 동안 가입자의 적립금은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나요?

- 6주동안 기존 상품의 약정 금리를 지급하거나, 만기 후 약정금리를 지급하는 등 상품의 약관 및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만,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을경우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Q-79

가입자 통지 후 2주가 지난날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데, 2주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 통지일로부터 기산되므로, 통지 익일부터 2주 후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 알림톡, 이메일 등 가입자가 당일에 확인 가능한 수단으로 통지하였을 경우 발신일로부터 날짜를 기산하며, 만약 연락처 오류 등으로 반송 될 경우 우편 등의 다른 수단으로 통지를 해야합니다.
- 우편 발송의 경우 가입자에게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발송일로부터 +2영업일로 기산합니다.
-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고 통지하였으나, 연락처 정보의 오류 등으로 통지 자체가 불가하다면, 이는 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 DC가입자라면 소속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연락처를 수정하여 추후 정상적인 통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해당건의 통지는 해당 가입자가 수령 가능한 회사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Q-80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통지 등을 위해 사용자가 DC 가입자의 연락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규약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용현황 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특히,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가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통지가 된 후 2주 후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통지의 역할 및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통지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Q-81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모든 적립금을 투자한 경우에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되나요?

- 만기가 없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100% 투자한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2천만원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고 3천만원은 펀드로 운용하는 가입자의 경우,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던 2천만원의 적립금에 대해 만기가 되었음에도 가입자가 6주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됨)

-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 중에서도 만기가 존재하는 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됩니다.

Q-82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해 만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례는?

- 법 제2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라 함은, 해당 상품의 가입 당시에 적립금의 운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상환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가입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상품의 청산, 해지” 등으로 인해 적립금이 상환된 것은 만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대략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만기로 보는 사례: 정기예금/GIC의 만기상환, ELB의 만기상환·조기상환·임의상환, 채권의 만기상환 등

2) 만기가 아닌 것으로 보는 사례: 펀드/ETF의 청산 및 해지 등

Q-83

기존에 대기성 자금을 적립되어 있거나 가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두고 있는 적립금에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되나요?

- 가입자가 의도적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있는 대기성 자금,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84

통지 후 2주가 지난 시점 또는 상품 만기시점이 휴일인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기초로 적용합니다.

Q-85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자동재예치는 폐지되나요?

-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는 불가합니다.

- 다만, 기존 약관 및 계약사항의 변경, 전산 개발, 가입자 안내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제도 시행 후 1년동안(‘23.7.11까지)은 제한적으로 재예치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예치를 하는 것은 불가

Q-86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절차가 법률상 의무로 진행됩니다.
- 기존 자동재예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자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절차로써, 사적인 계약으로 법률상 의무 절차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자동재예치가 가능할 경우 국회에서 합리적인 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Q-87

가입자가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만기예약매수를 통해 동일한 원리금보장상품을 매수하는 것도 자동재예치에 해당하나요?

-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만기 시점의 매수 상품을 일회적으로 미리 지정해 놓는 '만기예약매수'는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기예약매수를 통해 기존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계속 운용하는것은 자동재예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88

기존 상품의 만기 도래 시 만기 시점 금리가 높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자동운용되던 포괄운용지시도 불가능한가요?

- 포괄운용지시도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와 동일한 사유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는 2022.7.12.부터 포괄운용지시를 신규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운용지시를 변경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기존 가입자가 1년안에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가 지속 안내해야 합니다.
- 기존 가입자의 적립금도 2023.7.12.부터는 포괄운용지시를 통한 적립금의 운용이 불가합니다.

Q-89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로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려는 경우 규약에 반영되어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한가요?

- 규약에서 정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가입자가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적용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며,
-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직접 운용지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규약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전지정운용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90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로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도 4주 또는 2주의 대기기간이 필요한가요?

- 가입자가 직접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6주 간의 대기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대기기간은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직접 운용지시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라면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91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던 적립금을 다른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나요?

-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Q-92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정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던 금액에 대하여 언제든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패널티가 적용되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하던 금액에 대하여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하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은 사전지정운용제도 절차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Q-93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해 두었으나, 아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직접 운용지시 할 수 있나요?

- 해당 가입자는 현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정하여 바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Q-94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에 대하여 더 이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Opt-Out)

- 가입자가 옵트아웃을 하기 위해 옵트아웃을 하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통해 옵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옵트아웃은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해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던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고 다른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95

가입자 통지 이후 2주가 경과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될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적합성 원칙 등 금소법상의 의무를 다시 수행해야 하나요?

-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여 금소법 상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운용지시 미이행에 따른 가입자 통지도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되는 시점에서 적합성원칙 등의 의무를 다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Q-96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이후 실제 적용시점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투자성향 분석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가입자의 투자성향이 사전에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과 달라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선정 시점과 적용 시점' 차이로 인해 투자성향이 기존과 달라지거나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에 선정해 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물론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된 투자성향에 맞는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Q-97

최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부담금의 성격(정기부담금, 일시부담금, 경영성과급)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부담금의 성격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부담금의 성격과 관계없이 최초 가입 후 부담금이 납입되었음에도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 퇴직연금사업자는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 가입자통지 절차 등을 거쳐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Q-98

DC제도 가입 후 최초로 사용자 정기부담금이 입금되어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유형의 부담금(일시부담금, 경영성과급 등)이 입금되더라도 해당 부담금은 2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즉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나요?

- 부담금의 성격에 관계없이 최초 부담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후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한,
- 향후 납입되는 부담금은 2주간의 대기 없이 즉시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는 일시부담금, 경영성과급 등 비교적 큰 금액의 부담금이 납입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위 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Q-99

3개의 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가입자가 포트폴리오 내에 구성되어 있는 3개의 상품을 각각 별도로 운용지시(매수/매도)를 할 수 있나요?

-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가입자는 자신의 적립금이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될 때,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에 대해 개별적인 운용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포트폴리오의 개별 상품 단위로 매매할 경우,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중이 무너지게 되어 더 이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수 없고,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개별 상품을 별도 매수하고자 한다면,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를 전부 매도한 후에 개별 상품을 매수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 받기 위해 디폴트옵션 클래스로 만든 펀드상품 등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Q-100

포트폴리오형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중인 가입자가 특정 시점 이후부터 포트폴리오의 형태를 없애고 편입된 상품을 낱개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포트폴리오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가 포트폴리오형태로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서 가입자가 포트폴리오를 해체하고 그 안에 구성된 개별 상품을 낱개로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101

기준에 보유중이었던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만기되어 사전지정운용방법(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게 된 경우, 향후 동일 상품에 대한 만기 상환 처리 방법은?

- 월납, 분기납 등으로 인해 동일한 상품에서 연속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시에는 최초 만기 도래 시 가입자 통지와 2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며,
- 최초의 만기 도래 적립금액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 없이 만기가 도래 되는대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 또한, 기준에 보유중이었던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만기가 되어 전부 사전지정운용방법(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중인 경우에도,
- 최초 만기가 도래한 시점을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가입자통지와 2주간의 대기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 사전지정운용방법이 3년 만기 예금인 경우, 3년 단위로 한번씩은 가입자통지와 2주간의 대기기간을 가져야 함)

Q-102

만기 도래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기 위해 대기 중인 상황에서,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 시 이에 대한 의사표시가 가능한지?

- 만기 도래한 금액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기 전에, 가입자는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만기 상환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운용지시를 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 또한, 만기상환 금액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으면서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때 가입자의 의사표시는 만기 상환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리

Q-103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존에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변경 승인 절차는 기존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승인 받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 절차는 동일하나 신청 양식은 다름
- 다만, 기존 사전지정운용방법과 위험, 투자전략 등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등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간이 승인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Q-104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판단하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사례는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될 예정입니다.
 1.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만기, 발행기관 신용도 등이 가입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으면서 상품제공기관만을 변경하는 경우
 2. 포트폴리오: 운용계획과 투자전략 및 위험등급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투자비중만 소폭 변경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Q-105

승인 받은 포트폴리오의 위험등급의 변동이 없으나 포트폴리오 내 상품들의 위험등급이 변경된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트폴리오 유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포트폴리오 자체의 위험등급 변동이 없다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1) 포트폴리오의 위험등급이 변동되는 경우, (2) 포트폴리오의 위험등급에 변화는 없으나 포트폴리오형 사전지정운용방법 상품의 투자설명서에 적시된 운용방법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본 심의를 통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적인 펀드 수익자총회 개최 요건에 비추어 판단)

Q-106

퇴직연금사업자가 반드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 퇴직연금사업자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가입자 보호 등을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기존 상품의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등 승인 당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가입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Q-107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면 규약도 변경해야 하나요?

- 규약에 반영되어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명칭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규약도 변경해야 합니다.
- 그러나 규약에 반영되어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명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규약 변경이 불필요한 사례 예시: 위험등급이 동일한 다른 운용사의 TDF로 변경하는 경우 규약에 반영된 명칭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음
(○○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TDF → ○○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TDF)
- * 규약 변경이 필요한 사례 예시: TDF를 BF로 변경하는 등 상품의 유형 혹은 위험등급이 변동되는 경우 규약에 반영된 명칭의 변경도 필요
(○○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TDF → ○○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BF)

Q-108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규약의 변경은 정부의 승인에 따른 변경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로도 가능합니다.

Q-109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에 대한 통지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는 날짜의 기산 방법은?

-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변경 사실 등을 통지해야 하고,
- 변경 승인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기존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 이때, 날짜의 기산은 영업일이 아닌 역일(曆日)을 기준으로 하며, 변경 승인을 통보받은 날은 제외하고 기산합니다.

Q-110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퇴직연금사업자가 변경 승인을 받은 후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사유
 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3.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 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Q-111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할 경우, 통지 대상은 누구인가요?

- 변경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지합니다.

Q-112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은?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통지 방법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과 동일합니다.
- 통지의 효력은 해당 통지가 가입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하지만 수신확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의 도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단, 오발송으로 인한 메일의 반송 등은 통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13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변경 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던 가입자의 적립금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하나요?

-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변경 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었던 기존 가입자의 적립금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 * 14일이 지난날에 기존 적립금을 이전할 수 없거나, 이전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승인 신청시 해당내용 함께 제출
- 가입자가 변경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받은 이후 또는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스스로 다른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Q-114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에 따라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금소법상의 의무를 다시 수행해야 하나요?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금소법 의무를 다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등급이 상향되어 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소법상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Q-115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승인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Q-116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승인 취소 사유 발생 시 심의위원회에서 취소여부를 심의합니다.
- 심의위원회가 취소 결정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즉시 가입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Q-117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승인 취소 되었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즉시 이행해야 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는 무엇인가요?

- 퇴직연금사업자는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취소된 경우 가입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1. 승인 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을 해당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하며,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통지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승인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과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과,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Q-118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취소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기존 적립금을 매도할 경우 중도해지 패널티가 적용되나요?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취소와 같이 가입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품이 매도되는 경우 중도해지 패널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119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취소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할 때,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거나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취소 명령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다른 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가입자 보호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할 때 반드시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Q-120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공시는 언제, 어디에 되나요?

-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수익률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Q-121

사전지정운용방법 수익률 공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원리금보장상품은 공시 시점의 적용이율로 공시하며, 펀드상품은 과거 기간 수익률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펀드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개별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을 가중 평균하여 공시하며,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가 혼합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과거 공시 금리를 기준으로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과 가중 평균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수익률은 운용 유형 단위로 공시됩니다. 따라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운용 유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기존 상품의 수익률에 연동되어 변경된 상품의 수익률이 공시됩니다.

Q-122

사전지정운용방법과 기존 상품의 구분관리를 위해 상품명 혹은 상품 Class에 '디폴트옵션'을 명기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약관에 대한 금융감독원 승인이 필요한가요?

- 펀드상품의 경우 클래스 신설 및 수수료 변경 등 사항이 발생할 것이므로 약관 변경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서 변경 혹은 개별상품에 대한 약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예금, GIC)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기타

Q-123

신규로 DC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이나 IRP 가입자는 '22.7.12일 즉시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이 의무화 되나요?

-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신규로 DC형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이나 IRP 가입자는 즉시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기간, 전산 시스템 구축 기간, 가입자에 대한 안내 등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제도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시행 후 1년간은 행정지도 중심으로 제도의 도입을 유도하고 '23.7.12부터는 모든 사업장, IRP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124

퇴직연금사업자가 IRP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은?

- IRP는 규약이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대한 제시 없이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직접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상품을 제시해야 합니다.

Q-125

기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제(특정 사업자로부터 적립금의 30%를 초과하는 예금 편입 금지, 계열사 펀드 판매 제한 등)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제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 현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작업이 하반기 진행될 계획입니다.

Q-126

운용관리사업자와 자산관리사업자가 서로 다른 언번들 계약에서 자산관리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공하는 방법은?

-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승인 받는 주체는 운용관리사업자이므로, 자산관리사업자는 운용관리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라인업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자산관리사업자도 약관 및 시스템 변경 등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127

언번들 계약으로서 자산관리사업자가 신탁업 인가가 없는 보험사일 경우 운용관리사업자가 승인 받은 정기예금 또는 펀드 상품 등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 언번들 계약에서 원활한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보험사는 조속히 신탁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 단기간에 신탁업 인가가 어려울 경우 운용관리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도 함께 승인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Q-128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 시에도 자동재예치가 금지되나요?

- 포트폴리오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이 혼재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는 만기가 없는 포트폴리오로 판단하며, 편입된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 시에는 예외적으로 자동 재예치가 인정됩니다.
- 다만,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해당 만기가 그대로 적용되어, 만기 도래 시 가입자통지 및 대기기간 등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Q-129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클래스 등)을 직접 매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사전지정운용방법은 DC, IRP 제도에 신규로 가입하였거나, 운용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정하는 것입니다.
-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정하여 매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하 “옵트인”이라고 함)

Q-130

옵트인을 할 수 있는 가입자는?

-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에 한하여 옵트인이 허용됩니다.

Q-131

가입자가 옵트인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개수는?

- 가입자는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옵트인을 통해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특정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적립금으로 운용중인 가입자가 향후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옵트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용중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을 전부 매도해야 합니다.

Q-132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해둔 상품과 옵트인으로 매수하려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달라도 되는지?

-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가입자는 본인이 적용받을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해야 하며,
-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해둔 상품과 옵트인으로 매수하려는 상품이 반드시 동일한 상품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13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이 있는 가입자가 그와 동일한 상품으로 옵트인을 통해 추가 매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옵트인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이 없는 가입자에게 허용되는 것이나,
- 옵트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옵트인을 통한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Q-134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잔고와 수익률을 보여주는 방법은?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잔고와 수익률을 표시할 때는 개별 상품명이 아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명칭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 ○○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TDF XX,XXX원)

Q-135

퇴직연금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정보제공 및 통지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는 행위
나. 특정 가입자를 우대하여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도록 하는 등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영 제13조의3제1항 또는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행위

Q-136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에 따르면 가입자가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더 높은 위험등급의 상품에 투자하고자 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로부터 부적합 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을 때, 포트폴리오의 부적합 확인서 징구 방법은?

- 포트폴리오 유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개별상품단위가 아닌 포트폴리오 단위로 부적합 확인서를 징구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Q-137

운용지시가 없어 규약상 자동운용상품으로 운용되던 기존 가입자(계속성 운용지시)가 규약상 자동운용상품이 폐지된 이후에 사전지정 운용방법만 지정한 경우 법 시행 후 입금되는 부담금의 운용방법?

-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규약에 근거한 자동운용상품은 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기존 가입자는 향후 입금될 부담금에 대해 별도의 운용지시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의 부담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게 됩니다.
- 다만, 기존 자동운용상품(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던 적립금은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사전지정운용제도 절차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